

의안번호	제3025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5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025호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
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‘처우개선위원회’ 설치·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특성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제1항)
- 나.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(안 제12조)
- 다.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(안 제13조~제15조)
- 라. 위원회의 운영, 간사 조항 신설(안 제16조~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486(2025. 9. 5.)호]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412호
 - 가) 예고기간: 2025. 9. 1. ~ 2025. 9. 22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3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3.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

제1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
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<u>제10조(포상)</u> 군수는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「고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1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u>제12조(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u>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</p>

<신 설>

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

된 단체

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3.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

<신 설>

제14조(위원회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

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제1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비용발생 요인: 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참석 시 실비변상을 위한 수당 지급
- 소요예산: 3,000천 원(연간)
 - 회의 참석수당: 15명×2회×10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랑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-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 4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 -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-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4조의3(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·위촉)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의4(중앙위원회 회의 등)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1.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
 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-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의5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

-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4. 7. 2.>
1.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 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 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